



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

수신자 수신자 참조
(경유)

제목 안전관리인증기준(HACCP) 의무적용 유예 연장(연장심사) 승인 알림
((주)진00000)

1. 관련 :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인증과-2981(2026.05.22)

2. 안전관리인증기준(HACCP) 의무적용 유예(연장심사) 신청에 따른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.

구분	업체명 (대표자)	소재지	업종 (유형)	유예신청사유 (인증유효기간)	검토결과 (유예 기한)
HACCP 의무적용 대상 * 소규모 업소 중 연장심사를 일반업소로 받아야 하는 경우	(주)진성중 합식품 (신중현)	인천광역시 계양구 아나지로 428-11(작 전동, 지하1층~지하 3층)	식품 제조가공업 (국수(생면))	시설·설비 개보 수 (2026.03.30.) * 1차 유예 승인 (2026.07.30.)	적합 (2026.12.31.까 지)

*유예기한 종료 후 HACCP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생산판매하는 경우 법령 위반에 해당함.

끝.

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



수신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경인지원장, (주)진성종합식품

심사원

박다은

인증관리팀장

전결 05/27
이재형

협조자

시행 인증심사본부-3544 (2026.05.27.)

접수

()

우 28160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5로 156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

/ www.haccp.or.kr

전화 043-928-0126

전송 043-928-0139

/ pde@haccp.or.kr

/ 비공개(6)

「HACCP! 식품의 안전을 지키듯, 청렴! 우리의 P.R.I.D.E.를 지킵니다.」